

EU, 식품품질기준이 개도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 정 섭*

EU의 소매업체들은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생산자 및 수출업체들에게 점점 더 엄격한 민간부문 식품 품질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개도국의 EU 농산물 시장접근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될 소지도 있다. 민간부문 식품 품질기준의 등장 배경, 현황, 시사점 등을 EU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본다.

1. 머리말

유럽의 소매업체들이나 슈퍼마켓들은 상품 공급원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제3국의 공급자들에게 EU에 수출되는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민간 부문의 품질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자유 시장에서 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거래 협상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공급자들이 민간부문 품질 인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민간부문의 품질 인증이 사실상 위생을 빌미로 한 무역 장벽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들도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이 보고서는 EU의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의 관점에서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이 식품 안전성에 관한 EU의 법률적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EurepGAP(Euro-Retail Produce Good Agricultural Practices)과 BRC(British Retail Consortium)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¹⁾, 이 보고서는 EurepGAP이나 BRC 같은 민간부문 품질 인증은 필요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축산물 또는 축산가공품이 아닌 경우²⁾,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PA)’에 명시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equivalence of risk-outcome)’을 요구하고 있다³⁾. 그래서 최종 수입 상품이 EU 회원국의 공식적인 통제를 통과한다면, EU는 식물성 상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repGAP이나 BRC는 ‘생산 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equivalence of system)’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최종 상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urepGAP과 BRC는 단지 제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urepGAP이나 BRC는 생산과정에 대해 그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EU와 그 회원국들의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EurepGAP과 BRC의 세부 규정 사항들은 생산체계나 생산과정이 EU의 법률적 규정에 적합한 상품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U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보장받을 수 없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또 다른 수준의 ‘재보증’을 필요로 하는가?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들이 그러한 민간부문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성에 관한 EU의 법규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소매업체들과 슈퍼마켓들은 왜 민간부문 품질인증을 고집하는가? 정말로 무엇에 대하여 누

가 민간부문 품질인증을 필요로 하는가?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민간부문 품질관리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첫째, EU의 법규만이 홀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가? 민간부문의 품질인증 제도로 인해 식품 품질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가?

둘째, WTO 가입국들은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부문의 품질 기준 때문에 EU가 WTO 내에서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유럽의 고객들은 개발도상국 공급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 농업인들의 수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개발도상국 공급자들은 민간부문이 통제하는 EU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사로부터 출발한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선택지를 분석하고 제안하고 있다.

- (1) EurepGAP은 EU 기준의 준수를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가?
- (2) EU 집행위원회와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 설정 조직들 간의 대화
- (3) EU 집행위원회, 슈퍼마켓 및 소매업체, NGO 간의 대화
- (4) 인증 기구의 시장 감독 기능 강화

2.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 및 인증 제도의 출현

경제학 이론은 시장의 힘이 반드시 공공적 관심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경제학자들은 식품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특히 농축산물의 병원체 잔류 허용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덕적 해이

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품질 속성들은 일반 대중이 쉽게 추적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강한 유인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일이 민간부문에 넘겨진다면, 기준 설정이나 관리에 있어 그 수준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식품 산업에서는 그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슈퍼마켓들이 공급받을 상품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패턴을 보면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을 향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럽의 슈퍼마켓들은 그 공급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민간부문 품질 기준들을 준수하고 인증 받을 것을, 그리고 식품 안전성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이처럼 민간 부문의 품질 관련 제도들이 출현하고 변성하게 되었는가?

EU 수준에서 그리고 각 회원국 수준에서 모두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의 출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영국에서 살모넬라, 광우병, 다이옥신 등과 관련된 식품 파동들이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법 (Food Safety Act)’이 통과된 것은, 그 이후 EU 수준에서의 법규 정비를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 법에 의해,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그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모든 신선 식품은 소매업체의 브랜드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식품 공급사슬의 어느 한 단계(예: 식품 수입업체, 해외에 있는 수출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식품 공급사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추적하고 예방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평판과 재정자원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한 법률적 요구에 대응하여 영국의 슈퍼마켓들은 회사 내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팀들을 편성했다. 그리고 일차 생산자들, 식품 제조업체들, (선별적으로) 해외의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감독 활동을 전개했다. 회사들마다 각기 자체적인 규정과 활동들을 개발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제3의 감독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민간의 자기규제 활동은 일련의 ‘모범영농활동’(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⁴⁾ 또는 ‘모범위생활동’(Good Hygiene Practice, GHP)⁵⁾ 등을 낳았다. 이러한 활동은 서유럽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민간부문 식품 안전성 운동의 근본 토대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정부 웹 사이트에 분기마다 농약 모니터링 정책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를 통해 브랜드의 명칭, 소매 매장, 포장업체, 원산지 국가 등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공급자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영국의 몇몇 주요 슈퍼마켓들은 공급자들이 ‘최대 잔류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는 엄격한 의무사항을 마련했다. 게다가 EU 수준에서 마련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원칙과 ‘조기경보체계’ 또한 식품 관련 업계 사업자들에게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 자기보호라는 이유로 유럽의 소매업체들과 슈퍼마켓들은 공급자들에게 민간부문 품질인증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서 공급자들이 스스로 추가적인 최대 잔류 허용치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품질 기준과 관련하여 ‘천정을 향해 상승하는 경향’은 책임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소매업체들과 슈퍼마켓들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3. 식품 품질 관련 민간부문 제도의 개관

식품 산업에는 여러 가지 민간부문 품질 관련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와 ‘ISO 9000’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식품 관련 사업체나 조직들에게 HACCP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를 만든 나라들이 많이 있다. HACCP 체계는 최종 산물의 검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어 특정한 위해요소들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것은 FAO와 WHO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코덱스 식품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규정한 7개 원칙과 12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 HACCP를 운용하는 회사들은 각기 그러한 원칙들을 회사 고유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

ISO 품질 기준들 중 거의 대부분은 특정 제품, 원자재, 생산과정 등에 대해 매우 고유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ISO 9000은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SO 9000은 최종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산 조직이 스스로의 작업을 관리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과 체계가 ISO 9000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ISO 9000은 그 자체로 특정한 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SO 9000은 해당 사안(예: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규정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ISO 9000이 그 자체로 반드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HACCP 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HACCP가 ‘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meta-system)’이라면 ISO 9000은 ‘품질 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인 것이다. HACCP를 적용함과 동시에 ISO 9000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품 가공업체의 경우, ISO 9000과 HACCP가 크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한 기업이 HACCP 체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면, 대체로 ISO 9000이 규정하는 의무사항 중 80% 정도는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유기농 로고(Organic Farming logo)’라든가 일부 유명한 품질 표시가 도입되면서 식품 품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식품 품질 관련 정책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정부가 도입한 품질보증 제도와 품질인증 제도는 그 수가 4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절에서는 민간부문의 식품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도의 복잡한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2차원 틀을 제시한다.

차이점

수많은 민간부문의 식품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도들을 다음과 같은 두 기준을 가지고 2차원 평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제도인가 아니면 국제적인 제도인가? 둘째,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들 중 한 단계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공급사슬 전체에 적용되는가?

표 1 민간부문 식품 품질 보증 또는 인증 제도의 분류

	산업-특정적	공급사슬 전체에 적용
국내 수준에서 적용	APS	IKB, ABM, Certus, Q&S, Label Rouge, DS
유럽 또는 세계 수준에서 적용	EurepGAP, BRC, IFS	ISO 9000, HACCP, SQF 1000/2000/3000

특정 부문 또는 공급사슬의 한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에 초점을 맞춘 국내 수준의 민간부문 제도가 여러 개 존재한다. 예를 들어, APS(Assured Produce Scheme)는 ‘종합적 작물 관리’(integrated crop management)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신선 농산물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이슈들에 대처하려는 제도이다. 이것은 영국의 농업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다. APS는 영국에 존재하는 일련의 모범영농실천(GAP)들을 조화시키려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들에 접근하는 서로 유사한 인증 제도들이 여러 EU 회원국들에서 발전했다. 육류 산업을 예로 들면, 네덜란드의 IKB(Integrale Ketten Beheersing), 영국의 ABM(Assured British Meat), 벨기에의 Certus, 독일의 Q&S(Qualität und Sicherheit)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들을 갖는 인증 제도이다. 이러한 국내 수준에서의 인증 제도들은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들을 포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Q&S 체계는 공급사슬 전체에 적용된다. 동물 사료 생산에서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QS-GmbH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인증을 받는다. 벨기에의 Certus도 그와 같은 취지로 생산사슬의 각 연결 단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범위는 다소 좁지만 프랑스의 Label Rouge, 영국의 ABM, 네덜란드의 IKB, 덴마크의 DS도 생산과 육가공 단계에 걸쳐 일정한 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소매 매장에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공급사슬의 한 단계에만 접근하는 인증 제도들이 있다. 예를 들어 EurepGAP은 농산물이 농장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품질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사슬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들을 발전시켰다. 그 외에도 BRC Global Standard는 주로 포장센터(packing house) 운영과 관련된 품질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세심한 관리와 최소한의 가공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SQF 3000은 소매 매장에서의 품질 관리와 관계된 일련의 요구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유럽 수준에서 또는 세계 수준에서 다양한 모범영농활동, 모범제조활동(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모범소매활동 등을 조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국제 교역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들과는 별개로, 개별 슈퍼마켓들이 자체적인 체계와 표시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테스코(Tesco)가 “Tesco’s Nature’s Choice”를 그리고 Marks & Spencer는 “Farm to Fork”를 개발했다. “Tesco’s Nature’s Choice”는 기본적으로 농장 안에 적용되는 품질 기준이며 EurepGAP과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나 EurepGAP보다 그 프로

토콜(protocol)이 더 상세하며 준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Marks & Spencer의 “Farm to Fork”는 생산뿐만 아니라 포장과도 관련된 품질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repGAP과 BRC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체제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의 몇몇 대형 슈퍼마켓들도 자체의 브랜드와 더불어 품질보증제도를 개발했다. 까시노(Casino)의 “Terre de Saveur”, 오상(Auchan)의 “Filiere Agriculture Raisonnee”, 까르푸(Carrefour)의 “Filiere Qualite”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적 이슈나 환경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종류의 제도들도 있다. “Social Accountability 8000”, “Ethical Trading Initiative”, “Marine Stewardship Initiative”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내 수준의 또는 산업-특정적인 또는 슈퍼마켓-특정적인 제도들 또한 환경보존, 노동자 보건, 동물복지 등의 이슈들에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슈들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화를 지향하며

처음에는 개별 소매업체들이 자체의 규정을 개발하고 각자의 공급자들을 검사했다. 그 결과 여러 회사의 규정들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중복된 검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GAP, GMP, HACCP의 핵심 요소들을 구현한 연합적 또는 범산업적 규약을 형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 표준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일차 생산수준에서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탁월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EurepGAP이다. 한편, BRC, IFS, SQF 등은 식품 포장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 공통된 요구사항을 개발했다.

EurepGAP은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식품 안전성 파동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GAP 채택이 EU 법규 또는 개별 회원국 법규에서 의무적인 조항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APS는 GAP를 산업 전반에 걸쳐 정착시키

기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취급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중 수입 농산물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슈퍼마켓들은 GAP와 관련하여 ‘유럽의 기준’을 만들고 통합된 작물 관리를 촉진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1997년에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Eurep)’이 구성되었고, 1999년에는 모든 공급원들에게 적용될 단일한 프로토콜인 EurepGAP을 확립했다. EurepGAP에는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30여 개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urepGAP 회원업체들이 취급하는 신선 상품은 서유럽 시장 물량의 85%에 달한다.

농장 출하 직후의 단계에서는, 영국의 모든 소매업체들을 대표하는 ‘British Retail Consortium(BRC)’가 주도하여 1998년부터 소매 단계에서의 품질 기준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1990년의 식품안전성 법률에 따라 소매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 업체들은 자사의 라벨이 부착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BRC는 소매업체의 브랜드 식품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청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들이 소매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식품 기술 표준(Food Technical Standard)’을 도입했다. BRC는 HACCP 체계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취했으며 포장센터 운용에 관한 모든 측면을 고려했다. BRC 인증을 받는다면, 그 제조업체는 영국의 슈퍼마켓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몇몇 식품 소매업체들도 2002년에 ‘국제 식품 표준(International Food Standard, IFS)’을 개발했다. IFS는 브랜드를 갖춘 식품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 절차와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에는 프랑스의 식품 소매업체들과 도매업체들이 IFS 작업반(Working Group)에 참여했다. BRC와 IFS가 다루고 있는 이슈들 중 80% 정도는 동일한 것들이다.

유럽을 넘어서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안전 고품질 식품(Safe Quality Food, SQF)’이 개발되어 오스트레일리아와 해외에서의 도매 공급사슬

을 통제하고 있다. SQF는 ISO 9000 등과 같은 품질관리체계와 HACCP와 같은 식품안전성체계를 결합하여 추적가능성 확보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BRC는 HACCP를 주요 수단으로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SQF는 HACCP뿐만 아니라 식품 품질과 관련하여 ISO 9000과 같은 수단에도 동시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QF 1000은 일차 생산자에 대하여 간단한 HACCP 형태의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SQF 1000과 EurepGAP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EurepGAP은 식품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이나 동물복지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SQF 2000은 특히 식품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추어진 품질보증체계이다. 현재 개발 중인 SQF 3000은 소매업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관련 산업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제도들이 서로 명칭을 달리하면서도 그 요구사항은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검사 비용의 중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0년에는 전 세계 50여 소매업체들이 ‘세계 식품 안전성 이니셔티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를 만들었다. 여기에 참여하는 소매업체들이 취급하는 식품 소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액의 65%에 달한다. GFSI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code)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일련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식품 안전성 관리, GMP, GAP, HACCP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소들은 기존의 식품 안전성 기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GFSI는 소매업체들이 공급자들에게 하나의 규칙이나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도록 이끌고 있다.

GFSI가 규정하고 있는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농장 출하 후에 적용되는 네 가지 식품 안전성 관리 표준이 벤치마킹되고 있다. BRC 기술 표준, 네덜란드 HACCP 코드, SQF 2000, IFS가 그것들이다. 농장 출하 전 단계에 대해서는, GFSI가 SQF 1000을 인정하고 있다. EurepGAP과 GFSI는 과일류 및 채소류 관련 프로토콜을 벤치마킹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GFSI는 이렇게 벤치마킹된 식품 안전성 표준들이 소매업체들의 동의 하에 상품 공급원

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공급사들 전체에 걸쳐 자리잡고 있는 식품 공급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GFSI와는 별개로 ISO 22000 또한 2005년 1월에 세계적인 표준으로 출범하였으며 40개국 이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일차생산자들에서부터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이르는 전체 식품사슬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식품 첨가제, 사료, 운송, 포장 관련 업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HACCP 원칙을 토대로 수립된 것이며, 경영진의 노력과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ISO 22000이 GFSI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민간부문의 품질보증 제도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EU에 상당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소매업체들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EurepGAP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신선(또는 최소한으로 가공된) 과실류 및 채소류 부문에 투자하려면, BRC가 중요하다.

4. EU의 시장 상황

EU에 신선 상품을 수출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까? 유럽의 단일 시장은 동질적인 하나의 시장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실 식품 안전성, 환경, 품질, 기타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급자(또는 수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의 강도나 구체성 측면에서 유럽 단일 시장 내에서도 회원국들마다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EU 시장의 상황

유럽에 있는 과일 및 채소 수입업체들 대부분은 소매업체들과 직접 상품을 거래한다(75~80%). 이 수입업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로부터 열대 과일

이나 채소를 공급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생산, 취급, 포장 등에 관해 소매업체가 제시하는 세부 규정을 준수하는 우대 공급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에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비중은 약 15~20% 정도이다. 이것들은 레스토랑, 지방의 슈퍼마켓 등에 판매된다. 한편 5~10% 정도의 물량은 재수출된다. EU 시장은 열대 과일과 채소의 과잉공급 상태라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소매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은 많은 수의 과채류 공급업체들 중에서 자신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우대 공급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총국(DG SANCO)’은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공식적인 식품 안전성 기준과 모니터링 활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EU 회원국들도 국경을 넘나드는 농산물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 포장 및 표시 관련 의무사항, 검사체계 등을 발전시켜왔다. 결국 개발도상국의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EU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려면 EU, 회원국, 민간 부문이라는 적어도 3가지 단계에 걸쳐 존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식품 안전성 및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림 1>은 개발도상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신선 상품이 서로 다른 여러 공공 및 민간 기관(생산자, 수출업체, 국가 수준의 통제기관, 수입업체, 소매업체)에 의해 식품공급사슬 상의 여러 지점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보인 것이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EurepGAP과 BRC 등 민간부문의 의무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오른쪽 부분은 EU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이다.

공식적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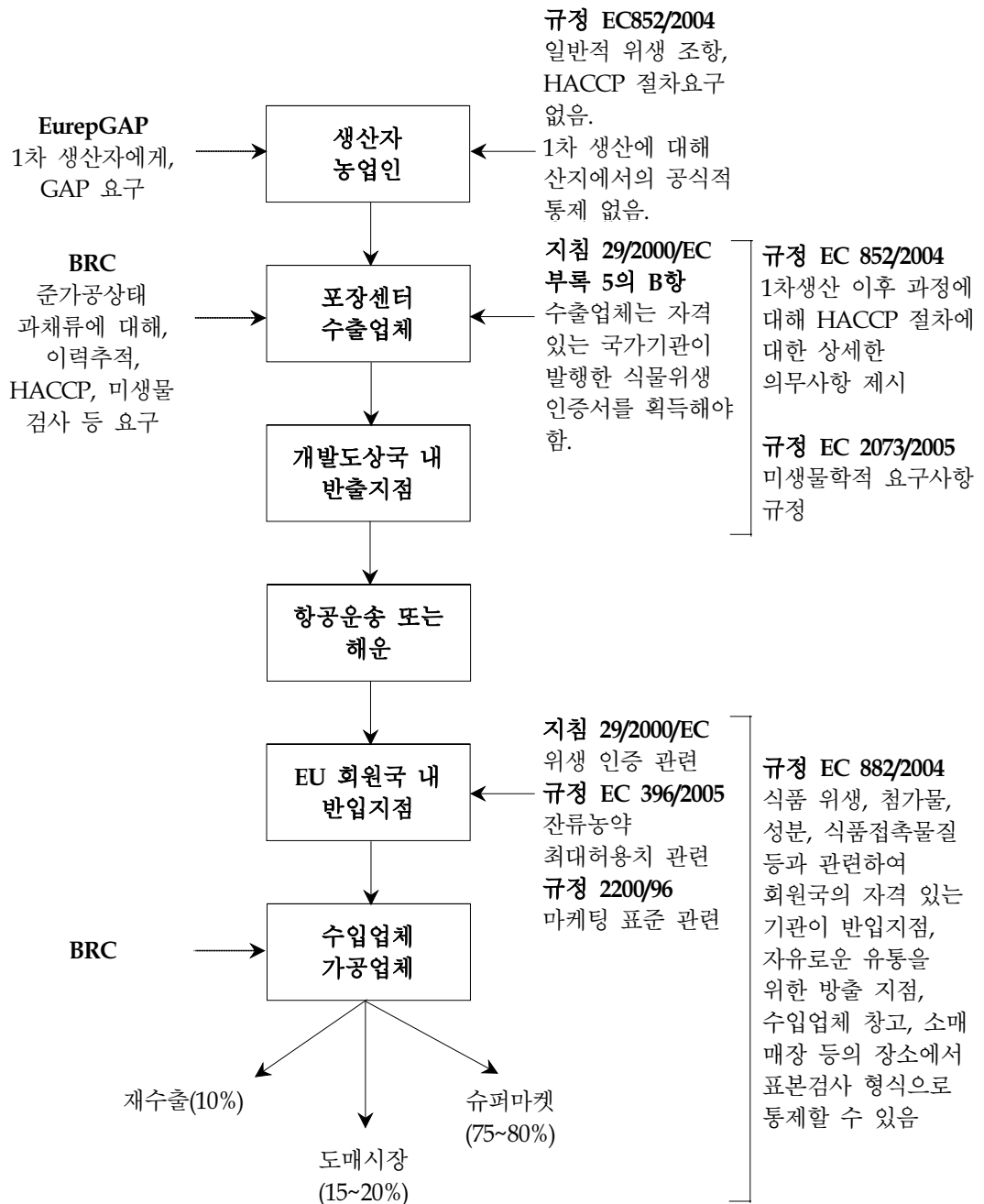
수입 과실 및 채소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표준들 중에서도 EU 내 반입지점에서 활용되는 가장 일반화된 것은 식물위생 관련 인증, 잔류농약 최대허용치 준수 여부, 품질에 관한 마케팅 표준 등이다. EU 규정 852/2004는 제3국에서 자격 있는 어떤 당국이 농장에서의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따른 상세

한 1차 생산물의 일반적 위생 관련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 현장 검사나 HACCP에 기반한 절차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만일 과일이나 채소가 개발도상국에서 준가공(semi-processed)되거나 사전 포장된다면 규정 852/2004에 따라 포장센터에서는 HACCP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절단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발아된 씨앗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EU 규정 2073/2005에 따라 의무적으로 미생물학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EU 지침 29/2000의 부록 5의 B항은 EU에 수입될 때 위생 인증서가 수반되어야 하는 식물 종류들을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 상품들이 EU에 운송되기 전에,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체들은 ‘해당 물질이 자격 있는 당국에 의해 검사된 것이며, EU로의 수입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질병 전염 가능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문제 없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국가의 식물 보건 당국이 발행한 위생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EU의 수입국 반입지점에서는 ‘국가 식물 보호 기구(National Plant Protection Services)’가 검사를 수행한다. 이때에는 전수 조사 또는 표본 조사를 통해 문서 점검, 식물 보건 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EU에 수입되는 과일과 채소는 해당 상품마다 정해진 잔류물질 최대 허용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지침 1991/414/EEC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물 상품 범주를 정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매년 과일 및 채소에 관한 농약 잔류량 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그 계획에는 당해에 검사해야 할 품목과 검사 횟수 등이 규정된다. 공인된 민간 연구실에서 상품마다 약 10개의 시료를 갖고 잔류농약 분석을 수행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조기경보체계’는 농약 잔류 최대허용치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정보를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가의 검사 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에 전달된다.

그림 1 EU에 반입되는 신선 과채류 상품의 식품 안전성 관련 통제절차



EU 규정 EC/2200/96의 마케팅 기준은 ‘1등급’ 또는 ‘2등급’이라고 지칭되는 상품 품질 지표들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반입지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당국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한다. 상품의 품질 등급이 팔레트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한 단계 낮은 품질 등급으로 이동한다. 수출업체들은 EU에서 검사를 받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상품이 검사를 받기까지는 4~5일 정도를 대기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수도 있어 신선 농산물의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규정 EC/1148/2001의 제7조에 따라 제3국 정부는 상품이 원산지 국가를 출발하기 전에 관련 마케팅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EU가 발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케냐의 경우, 민간 고객들이 지적하는 품질 관련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EU 회원국의 반입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수출업체들은 지적한다. 상품이 민간부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체는 품질에 대해 덜 엄격한 다른 고객들에게로 상품 판로를 돌리거나 판매 가능한 상품들의 품질 등급을 대폭 낮추어서 판매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검사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EU의 수입업체나 소매업체가 요구하는 민간 품질 및 안전성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기준들 중에서도 EurepGAP은 EU에 있는 소매업체들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종종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EurepGAP은 원래 기업들에게 주어진 ‘성실한 의무 이행’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여기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EurepGAP 인증은 2005년쯤부터는 유럽의 30여개 소매업체들에게는 시장 접근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 버렸다.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 소매업체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에서는 까르푸(Carrefour)가 EurepGAP을 채택한 최초의 소매업체이다. 2006년 이후 독일 시장은 EurepGAP 인증을 받은 상품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소매업체 외에도 일부 도매시장들도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들에게 EurepGAP 인증

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EurepGAP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이 공인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EurepGAP의 생산자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농장에 대해 최초 인증과 연례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총 214개의 관리 항목이 있다. 이것들은 49개의 주요 필수 항목, 99개의 일반 필수 항목, 66개의 권고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관리 항목들에는 포장 관리, 품종, 토양 관리, 비료 사용, 관개, 작물 보호,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노동자의 보건과 후생이나 야생생물 보호 등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들도 있다. 이러한 관리 항목 이행에 성공한 생산자에게는 1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된다. 생산자가 ‘주요 필수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인증서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일반 필수 항목’의 95%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증서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인증은 폐기된다.

기업이 신선 농산물 절단이나 최소 가공 활동에 투자한다면, 그 때에는 BRC 인증이 중요해진다. BRC 인증은 소비자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전처리된 샐러드, 과일, 채소 상품 등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EU의 선도적인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려면, 공급자들은 현지에서 HACCP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며 상품의 이력추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BRC 기준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미생물학적 검사는 ‘성실한 의무 수행’이 적용되는 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슈퍼마켓들은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에 그러한 검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BRC 식품 표준에는 특정한 미생물학적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품에 미생물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검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조리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절단된 채소류 상품을 직접 손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품이 EU 안으로 진입할 때, 수입업체는 도착 즉시 포장재와 상품의 외관을 점검하고, 상품 중 표본을 취하여 그것들을 실험실에 보낸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공급업체마다 그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매년 1~2회 표본을 채취한다. 슈퍼마켓은 상품이 물류 센터에 도착하는 즉시 상품의 시각적 외관을 간단하게 검사한다. 도매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HACCP나 이력추적제는 아직까지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5. 무역을 촉진하는 민간부문 품질 기준

민간부문 품질 관련 제도들이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그 의무사항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소매업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EurepGAP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개발도상국의 어떤 기업들은 가공된 신선 해산물이나 절단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과일 및 채소류 상품에 대해 BRC 인증을 받기도 한다.

EurepGAP은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EurepGAP은 ISO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기준을 획득하는데 적합한 규범적 문서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련의 일반 규정, GAP 프로토콜, 체크리스트가 딸려 있는 검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토콜은 14장에 걸쳐 구조화된 214개의 관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인증 받은 상품의 농업적 생산과정 전체에 관한, 즉 땅에 식물이 파종되는 순간부터 가공되지 않은 최종 산물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규범적 준수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확실히, EurepGAP은 절차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EurepGAP은 ‘생산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urepGAP은 의도적

으로 EU 법규의 요구수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EU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공급자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EurepGAP은 기준 설정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명시적인 EU 규정이 있는 경우 EurepGAP은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U 규정이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EurepGAP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몇몇 EU 회원국들은 EU 규정보다 더 엄격한 의무사항을 정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EurepGAP은 농업인들이 EU 회원국들의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그것을 돕는다.

그 예로 EurepGAP의 특정 작물 보호 항목과 병충해 종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항목을 들 수 있다. 잔류농약 최대 허용치는 EU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조율되고 있지 않다. 수입 과일 및 채소에 대해 개별 회원국마다 나름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다. EurepGAP은 상품의 목적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repGAP은 최종 판매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생산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갖고 있다. 셋째, EurepGAP은 또한 생산국의 법규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등과 같은 몇몇 주요 수출국들은 EU의 회원국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요구사항들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자국의 기준이 엄격하다. EurepGAP의 인증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인증신청자가 원산지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때, EurepGAP은 관련 법규의 준수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규 준수는 EU로의 성공적인 농산물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생산자가 EurepGAP 인증을 받았다면, 그는 EU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EU는 일차 생산물에 대해서는 HACCP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EU는 SPS나 ‘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요구하는 ‘리스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 조치의 동등성’을 요구한다. 수입된 최종 농산물의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EU 회원국들이 공식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생산과정에 관해서는 EU 규정 EC/852/2004가 일차 생산에 대한 일반적 위생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 있는 당국이 EU로 수입되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공식적 관리를 수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위생 관련 조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식적인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최종 수입 상품이 EU 회원국의 공식적 통제절차를 통과한 것이라면, EU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과일과 채소의 생산과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EU의 공식적인 통제와는 달리, EurepGAP은 생산 과정이 법규에 합당한 상품을 만들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절차 인증이다. 그 기준 설정 과정에 있어, EurepGAP은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특정 상품 부문에서 리스크 유형을 결정하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HACCP 평가를 수행한다. EurepGAP은 약간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코덱스 HACCP의 단계별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그러한 종류의 공식적인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BRC 기준은 개발도상국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BRC Global Standard - Food’는 소매 브랜드 상품, 브랜드가 있는 식품, 식품 서비스·급식·식품 제조 기업들이 사용하는 식품이나 첨가물 등의 형태로 공급되는 전처리된 일차 상품이나 가공식품의 제조에 대해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제조되거나 준비된 상품들에 대해 인증이 적용된다. 생산현장의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는 저장시설도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BRC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 상품이 포장되는 포장센터나 공장에서의 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생산 이후 단계에서의 식품에 대해 EU 규정 EC/852/2004는 현장에 HACCP에 기초한 체계를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무엇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만,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BRC는 HACCP와 이력추적제의 존재 여부와 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BRC 기준이 법규 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U 법규가 그러한 종류의 품질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다면 EU의 일반적인 식품 법규와 최근에 제정된 위생 관련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BRC 인증을 받은 공급자들은 GHP와 GMP를 달성하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BRC의 범주 안에 있는 상품들의 경우 EurepGAP이 다루는 범주인 일차 생산물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BRC의 절차는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농약 잔류나 1차 오염의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통조림이나 냉동 같은 종류의 기술은 그 자체로 일차 생산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BRC의 영향에 관해, BRC의 대표자는 제조된 혹은 포장된 상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을 열고 EU나 소매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BRC의 기준은 공급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BRC는 공급자들이 BRC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지침을 만든 바 있다.

민간부문 식품 품질 관련 제도들의 긍정적 효과

EurepGAP과 BRC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때, 이 두 제도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EU로의 농산물 수입을 촉진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EU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는 EU의 법률적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게다가 EU의 단일한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회원국들 각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EU 시장에 진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EurepGAP이나 BRC가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BRC나 EurepGAP 인증을 받는다면, 공급자는 EU의 소매업체와 슈퍼마켓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검사 절차 문제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EurepGAP과 BRC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활동, 위생활동, 제조활동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성 관리 체계 현대화는 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농약을 덜 사용하거나 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은 환경과 농업노동자 보건 측면에서도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EurepGAP이나 BRC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평판이 좋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유럽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도록 기여할 것이다.

6. 무역 장벽으로서의 민간부문 식품 품질 관련 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민간부문 식품 품질 관련 제도들의 역효과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도들이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간부문 제도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크고, 개발도상국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는 행정적, 기술적, 과학적 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준수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

그러한 제도들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반복성 비용과 비반복성 비용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반복성 비용이란 기준들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일회성의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의 투자비용을 말한다. 실험실 인프라구조와 가공시설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절차 수립,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새로운 관리체계 설계 등에 따르는 비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회사마다,

공장마다, 또는 농장마다 식품 안전성 관리체계나 현장에서의 인프라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비용은 공장마다 농장마다 회사마다 달라진다. 그리고 재배자나 기업의 경험 및 준비도(preparedness), 활동 범위, 특정 시장에서의 의존도 등도 모두 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준수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수준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다.

EurepGAP 준수에 따르는 비용의 대부분은 농장 인프라구조를 개선하는데서 발생한다. 중앙집중화된 생산물 취급 체계 개발,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저장고 설치, 전문화된 비료·작물 보호제 살포 인력 및 장비 활용 등에 수반하는 비용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BRC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따르는 비용 중 대부분은 식품가공 기업이 HACCP 체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에어컨디션 설비, 통풍 설비, 물 정화 체계, 공냉 설비, 높은 수준의 위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장 장치 등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복성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정기적 관리 체계 유지, 실험실 검사 프로그램 운용, 연례적인 검사, 기록 유지, 이력추적제 실행 등에 따르는 비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인증 기관마다 요구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현지에 있는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검사 비용이 꼭 저렴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의 인증기관들은 유럽의 인증기관들에 비해 1.5~4배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기술적·행정적 복잡성

비용 문제는 겹쳐 두더라도, 민간부문의 식품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뒤따른다는 점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또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 몇몇 개발도상국들에서 EurepGAP이 적용된 사례를 관찰한 영국의 ‘자연자원연구소(Natural Resources Institute, NRI)’나 ‘국제 환경개발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의 보고서에 따르

면, 농업인들이 기록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ISO의 품질관리체계 인증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데에는 정말로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런 품질관리체계 인증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짧아도 1/2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400 종의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들 간의 상호관계를 생산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업인 생산자 단체는 막대한 규모의 외부 지원 없이는 그와 같은 ISO 형태의 문서 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EurepGAP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유지하려면 좋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다.

BRC Global Standard와 관련해서는 금속성분 추적, 상품 리콜, 저산도 통조림 포장, 저온살균, 질병 통제, 내부 검사, 이력추적제, 품질 측정,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의 문제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상품 리콜 절차에서부터 성분 관리나 가공시설 내부의 운영 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다. BRC의 기준은 EU와 영국의 식품 법규가 정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BRC의 기준이 법률적인 요구사항의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특히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경우에 그러하다. EU의 식품 법규는 식품 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공급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만 확보하면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BRC 기준은 식품 기업이 상품의 이력을 बै치(batch) 수준까지 내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대개의 경우 소규모 수출업체들은 그러한 BRC의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킬만한 재정적 능력, 인적 자원, 인프라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BRC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업체들이 대개는 그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을 풍부하게 갖춘 대기업들뿐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체들이 EU의 선도적인 슈퍼마켓에 가공된 채소 및 과일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들은 BRC가 인증한 포장센터를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EU 안의 식품가공 기업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EU의 법규를 준수하고 유럽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BRC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유럽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윤을 더 남길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일차 생산부문에 한한다면, BRC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사업체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역 장벽

개발도상국 농업인들에 대한 EurepGAP의 영향은 농업경영의 규모나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00~1,000ha의 경지규모를 갖는 대규모 상업농 경영의 경우에 재정, 인프라구조, 인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0.1~4.0ha 경지규모의 소농경영의 경우, EurepGAP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있어 재정 자원과 인프라구조의 부족, 인력과 역량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은 초기 비용을 감당하려면 외부로부터의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의 경영체들만이 농업소득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음 표는 EurepGAP 준수에 수반하는 비용이 수출지향적인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의 수익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이 없이는 EurepGAP 준수에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해 이들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이 주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준수에 따르는 비용이 크고 기술적·행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식품 품질관리 기준은 개발도상국의 소농들이나 소규모 수출업체들에게는 EU 시장에서의 진입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EurepGAP 회원들이 서유럽의 신선 상품 시장 물량의 85%를 취급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EurepGAP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자격 요건으로서 EurepGAP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EurepGAP 시스템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표 2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EurepGAP 준수 비용과 연간 한계수익의 비
단위 : %

경지규모 (ha)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이 있는 경우, 연간 한계 수익 대비 EurepGAP 준수 비용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이 없는 경우, 연간 한계 수익 대비 EurepGAP 준수 비용	
	자본비용(%)	재발성 비용(%)	자본비용(%)	재발성 비용(%)
2.0~6.0	2~5	0.4~1	8~23	3~8
1.0~1.8	3~8	1~2	26~41	9~14
0.3~0.8	12~33	3~8	58~160	19~53

자료: Joint presentation "Standards Compliance" by A. Graffham(NRI) and B. Vorley(IIED) in the informal seminar on the 7th of December, 2005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소규모 생산자나 무역업체들에게는 좋은 피난처였던 도매시장들조차도 민간부문의 식품 품질 관련 기준과 EU의 새로운 법규와 관련된 거대한 규모의 경제 안으로 빠르게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규모 수입업체와 도매업체들도 EurepGAP 인증을 시장 진입을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urepGAP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나 기업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럽 시장 접근을 막는 역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더욱 염려되는 것은, 구매고객들의 식품 안전성 관련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아이보리코스트의 파인애플 생산자들에게 2006년 1월 1일부터는 EurepGAP 인증 상품만을 구매하겠다고 통보한 적도 있다. 이 소매업체들은 잔류농약 측정치가 EU 법규가 정하고 있는 양의 1/3 이하이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EurepGAP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뿐만아니라 EurepGAP 옵션 1인 “개별 농가 인증”만을 인정하겠다고 공표

했다. EurepGAP은 “농가 단체 인증”을 옵션 2로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점점 심화된다면, 이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신선농산물 공급을 제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특히 소농들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7. 유럽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의 적법성

2005년 7월에 있었던 SPS 위원회에서 자마이카, 페루,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등은 유럽 슈퍼마켓에 바나나와 여타 상품들을 수출하는 데 따르는 요구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국가들은 EurepGAP의 SPS나 TBT 관련 요구사항들이 EU 회원국 정부의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2006년 SPS 위원회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몇몇 국가들은 SPS 협정문 제13조의 문구를 더 명확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었던 SPS 협정문 제13조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협정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안에 소재한 비정부적 실체(non-governmental entities)들이나 그것들이 모여서 구성한 지역 협의체(regional bodies)들이 본 협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단들을 취할 수 있다.”

EurepGAP이나 여타의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는 ‘비정부적 실체’의 범주 안에 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EU 집행위원회는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들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PS 협정문에서의 ‘비정부적 실체’라는 용어의 정의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비정부적 실체

SPS 협정문에서 ‘비정부적 실체’라는 개념은 충분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

다. TBT 협정문은 ‘비정부적 실체’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TBT 협정문 제4조 1항은 ‘표준을 관리하는 비정부적 실체(non-governmental standardizing bodi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정부적 실체’라는 용어는 분명히 ‘규범을 설정하는 비정부 조직’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러한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SPS나 TBT 협정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비정부적 실체’란 개별 경제주체(또는 그들의 결사체)가 아니라 SPS 및 TBT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부여 받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부문의 실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urepGAP 체계는 하나의 비영리단체가 관리한다. EurepGAP 표준은 동수의 소매업체와 공급자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술표준위원회’의 선출직 위원들이 설정한다. 공급자에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인 협회, 수출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협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기업이나 협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EurepGAP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선출된 것이다. 이 위원회는 회의에 여타의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키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이기 때문에, EurepGAP은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어떤 사무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EurepGAP은 TBT 협정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정부 실체’와는 들어맞지 않는다.

개입 또는 비개입

민간부문의 식품 품질관리 제도들 중에서도 EurepGAP이 비정부적 실체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 SPS 협정문 제13조는 이들 민간 조직들이 하는 일들을 규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협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민간부문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혀져 있다. 결국 그 조직들은 자유 시장에서 활동하는 두 주체들 간의 상업적 계약의 일종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민간부문 조직들은 스스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슈퍼마켓이나 소매

업체들이 내세우는 그런 민간부문의 품질 기준 같은 것들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그 민간부문 조직들을 상대로 개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SPS 협정과 TBT 협정은 ‘리스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EurepGAP은 ‘생산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을 요구한다.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동원하여 안전한 식품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개발도상국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EurepGAP에서는 ‘생산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urepGAP이 EU와 그 회원국들의 법규를 참조한 것이라 할지라도, EurepGAP의 관리항목들 모두가 참으로 식품 안전성과 농장에서의 GAP를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EurepGAP을 준수하는 것이 식품 안전성과 농장에서의 GAP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EurepGAP은 4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종류의 제도들 중 하나일 뿐이다. 환경, 사회, 노동자 보호, 동물복지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NGO의 수가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요구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 바깥의 다른 제3국 모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무언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가 농업인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EU 시장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8. 정책적 선택지와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EU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둘째, 슈퍼마켓, 소매업체, 민간부문 품질 인증기관 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EurepGAP은 EU와 그 회원국의 법규를 참조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법률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WTO의 틀 안에서 볼 때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를 규제할 의무가 없다.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에 개입하는 것을 꺼린다면,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역량을 쌓기 위해 이루어졌던 투자의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민간부문 식품 품질관리 제도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시장 접근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8.1. 법률적 수단 : EU 규정 EC/882/2004

이들 민간부문에서 품질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하는 조직들을 EU의 입법 과정 안에 통합시키려면, EU 집행위원회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규정 EC/882/2004는 공공부문의 공식적 통제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 두 측면에서의 공식적 통제

규정 EC/882/2004는 EU 회원국의 법 집행기구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EU 집행위원회 산하 ‘식품수의 사무국(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정하고 있다. FVO는 EU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제3국들에서도 EU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개선을 위해 제언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제3국들에 존재하는 위생관리체계의 일반적 조직과 관리활동에 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 이

는 대개 동물성 식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FVO가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FVO의 보고서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수출 허용 대상 국가 목록(positive list)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물성 식품이 아닌 경우, FVO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동물성 식품이 아닌 경우 그러한 수출 허용 대상 국가 목록이 필요하지 않다. FVO는 EU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뿐이며, 민간부문도 그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보고서에 기초하여 민간의 사업자들은 특정 제3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가 식물성 식품에 관하여 FVO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과 자격 있는 당국을 확대·설치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식물성 식품 공급자들에게 규정 EC/882/2004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EurepGAP은 EU 표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인증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가?

동물성 식품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식물성 식품에 대한 공식적 통제를 강화시켜야 할 여지가 있다. EurepGAP은 일차 생산자들이 EU 법규를 충족하도록 이끄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repGAP이 EU 시장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농업인/생산자들을 인증하거나 검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원칙적으로 규정 EC/882/2004의 제5조는 (EU 회원국과 제3국에서 모두) 자격 있는 당국이 공식적인 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를 민간 기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사무 위임에 따르는 많은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위임받은 민간 기구는 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민간 기구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불편부당해야 하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민간 기구들은 수행할 사무와 실험실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들은 법률적 토대 위에서 자격 있는 당국과 통제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문제는 EurepGAP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장치에 속한다는 점이다. EurepGAP은 앞의 규정 제5조에 정해져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설령 그것들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EurepGAP은 민간 부문의 표준 설정 조직일 뿐이지 공식적인 인증 기구는 아니다. EurepGAP은 독자적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검사 활동은 승인된 독립적 인증기구(예: CMi, EFSIS, Africert 등)에 위임된다. 그리고 EurepGAP은 제3국에서 그와 같은 인증 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뜻이 없다. 그러므로 EurepGAP을 공식적인 인증 기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없다.

2. 정치적 제언

EU 집행위원회와 민간부문 품질기준 설정 조직들 간의 대화

민간부문 조직들은 자체의 품질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그것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들과의 무역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내실 있게 품질기준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소한 양자가 대화는 할 수 있으며, 제3국과 논의할 때 뒷받침이 될 플랫폼을 공유할 수는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 7일에 있었던 비공식 세미나가 그러한 대화의 출발점이었다. 양자 간의 대화는 작업반, 자문위원회 등의 형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 두 주체들은 또한 가능한 한 품질기준 준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슈퍼마켓/소매업체, NGO 간의 대화

EU 집행위원회와 슈퍼마켓/소매업체들 간의 대화도 시작되어야 한다. 공급

자들에게 민간 인증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결국 슈퍼마켓들과 소매업체들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개발도상국이 EU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인애플에 관한 독일 소매업체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었듯이, EU가 정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잔류물질 허용치를 요구하는 소매업체들의 컨소시엄들이 자꾸 많이 출현한다면 유럽 시장에 특정 상품을 공급해왔던 전통적인 공급자들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슈퍼마켓들이 제3국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농약이 더 많이 있는 상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기존에 과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EU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상품들은 안전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EU 법규보다도 더 엄격하게 잔류물질 허용 수준을 정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한다.

이때 공급사슬 내에서 비용 부담과 편익 공유가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소매업체들이 가격 프리미엄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어떤 소비자들은 개발도상국 공급자들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지불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공정무역 상품(fair-trade products)’이라는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슈퍼마켓과 소매업체들과 ‘공정무역’ 관련 이슈들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증 기구에 대한 감독 강화

품질 인증을 위한 검사에 있어 상당한 허점이 자주 발견되곤 한다. 이는 일부 인증 기구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뜻한다. 검사의 질은 모든 품질 기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증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인증기구 승인 작업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자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june/tradoc_127969.pdf

(EU 집행위원회 외교통상총국)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완역

-
- 1) EurepGAP과 BRC는 유럽에서 정착된 대표적인 민간부문 품질 기준 또는 품질인 증체계이다.
 - 2) 이 보고서의 논의는 축산물 또는 축산가공품이 아닌 식물성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
 - 3) WTO/SPS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그 예로 'Assured Produce Scheme'을 들 수 있다.
 - 5) 그 예로 'BRC Technical Food Standard'를 들 수 있다.
 - 6)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TSG(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